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2월 16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2021. 12. 1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  
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의원의 상해 보상 등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9조, 안 제13조 ~ 제15조)
-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의원의 상해보상 등 심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와 제5조는 의원의 상해 보상과 관련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이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 안 제9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 중 “구청 관련 국·과장 1명”을 “의회협력업무 소관 국장”으로, 안 제14조에서 심의회의 간사를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을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구체화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4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16일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8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의원의 상해 보상 등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안 제13조 ~ 안 제 15조)

나.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의원이 회기(법 제61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1.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2. 의회협력업무 소관 국장

제11조 전단 중 “하며”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의 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란 <u>의회의원이 회기(법 제61조에 따라 폐회중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u></li> <li>2. “의정활동비”란 <u>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u>을 말한다.</li> <li>3. “유족”이란 <u>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u></li> </ol>	<p>제1조(목적) -----          -----<u>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u>-----          -----          -----          -----.</li> <li>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li> <li>3. ----- <u>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u> -----</li> </ol>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

-----  
-----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따라 -----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  
-----  
-----  
-----

포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2. 구청 관련 국·과장 1명
3. 4. (생략)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생략)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

-----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

② -----

-----

-----

-----

-----

-----

1.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2. 의회협력업무 소관 국장

3.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 하며, 1회에

한하여 -----

----- 의회 의

원-----

-----.

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 통보하여  
야 한다.

<신 설>

-----  
-----  
----- 따라 -----  
-----.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

제14조(심의회회의 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영등포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상병장소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b>지방자치법 제34조</b> 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상병장소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 <b>지방자치법</b> 」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